

남중국해 중재판정상 전통적 어업권 인정의 쟁점

이용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Legal Issues on the Recognition of Traditional Fishing Right in the Award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Lee Yong Hee*

* Maritime Law Department,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핵심용어 :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관할권, 전통적 어업권, 유엔해양법협약

Key Words : South China Sea, Arbitral Tribunal, Jurisdiction, Traditional Fishing Right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 서론

남중국해 중재재판사건에서 필리핀은 청구취지 10번으로 Scarborough Shoal(황암도) 영해에서 필리핀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이 존재하며, 중국이 동 권리를 방해한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는 바, 이 연구는 동 판정내용에 대한 쟁점별 평가를 시도하였다.

2. 필리핀의 청구내용과 주장 분석

필리핀은 국제관습법상 타국 영해에서의 전통적 어업권이 인정되며, 연안국의 영해 주권 행사시 협약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일반국제법상 인정되는 전통적 어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 광공선이 황암도 영해로 진입하여 전통적 어업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는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하였다.

3. 중국의 입장과 주장 근거

중국은 재판에 불참하였지만, 황암도 주변해역이 원나라 이래 중국 어민의 전통적 어장이었으며, 필리핀이 중국 어민의 어업활동을 방해한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 성명에서 강조하였다.

4. 중재재판소의 쟁점별 판단

청구취지 10번에 대한 관할권측면에서, 동 내용이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안도 아니며, 협약 제15부 제1절의 요건

도 충족하였고, 황암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쟁점이 존재하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전통적 어업권 인정에 관해서, 국제관습법상 전통적 어업권이 인정되고 있고, 동 권리는 국가의 권리가 아닌 개인의 사적 권리이므로 국가간의 분쟁과는 무관하게 연안국이 존중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존중하지 않은 중국의 행위는 협약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동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연안국이 합리적 규제권 및 전통적 어업기준 적합성 판단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5. 평가

관할권측면에서 중재재판소는 황암도의 영토주권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전통적 어업권이 연안국 영해에서 인정되는 타국민의 권리고 그것을 중국이 위반하였다면 중국이 연안국이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황암도의 영토주권 미확정상태에서 고려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관할권이 부존재하다고 보았어야 한다. 또한 사인 권리에 대한 침해라면 선결적으로 국내적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 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전통적 어업권에 대한 법적 해석은 법해석상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협약 제51조의 전통적 어업권이 국가의 권리인 반면 영해에서는 사적 권리라고 인정한 것이 협약상 동일용어의 서로 다른 법적 권리 인정이라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First Author: yhlee@kmou.ac.kr, 051-410-4395